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

1. 지방계약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87.745% 등)을 반영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26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26년에 이행할 계약에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하여 체결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단순노무종사원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7절 실비 산정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 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4. 또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은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 해당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무과장), 부산광역시(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회계과장), 인천광역시(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회계과장), 대전광역시(회계재산과장), 울산광역시(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회계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재무행정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관리과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예산재정과장), 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한건설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주무관	전문임기제 나	회계계약제도 전결 2026. 1. 7.
김민경	급 예병찬	과장 김지은

협조자

시행 회계계약제도과-109 (2026. 1. 7.)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5 팩스번호 044-204-8967 / namkid76@mail.go.kr / 대한민국 공개